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0
----------	------

2016년 9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8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70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9월 6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시민건강국장 나백주)

1. 제안이유

-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 및 건강권 보장과 서울시 공공의료 혁신 강화를 위한 통합적 관리, 전문적 지원과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부터 제11조)

나. 출연금, 수익사업, 사업의 위탁,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2조부터 제17조)

다. 검사·보고,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8조부터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17세출예산 반영 예정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행정규제심사) : 규제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신설) : 해당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자료) : 협의완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평가) :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16. 7. 14. ~ 2016. 8. 3.) : 제출의견 없음.
- (2) 비용추계 등 자료 : 별도 붙임.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조례안의 취지와 구조

- 본 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제1조).
- 이를 위하여 본 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정의(제2조),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내용(제5조),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재산조성(제6조), 정관(제7조), 임원과 이사회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제8조, 제10조,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재산과 관련하여 출연금의 교부(제12조), 운영재원(제15조), 사업년도(제16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의 제출(제17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음.

2 제정안의 필요성

가. 공공의료기관의 경영개선

-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서울시 공공의료기관(이하 “시립병원”)의 중요성과 사회적 투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1997년 이후 시립병원의 신축 및 시설현대화에 사용된 예산은

8,289억원임. 또한 매년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운영비를 이유로 13개 시립병원에 투입되었으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서울시의 시립병원 지원은 병원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적자 보전, 기능보강과 같은 단순 지원 형태에 집중되어 왔음.

- 시립병원이 가진 공공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사회적 투자 측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경제적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적인 조직에 의한 컨설팅 등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나. 시립병원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

- 현재 서울시는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산하에 시립병원관리팀을 두어 시립병원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¹⁾
- 시립병원과 관련한 업무는 보건학적인 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경영, 회계, 전산, 건축, 법 등 다양한 지식이 요구됨. 병원은 기술과 자본의 집약체이며 고도의 과학화, 전문화된 대표적인 전문가 조직으로서 구성원의 자율성이 중시되는 특성이 있음.
- 따라서 병원을 관료적인 행정조직의 틀로 판단·지원·관리하는 방식보다는 해당 분야 전문가 조직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1)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시립병원 운영팀은 팀장을 포함 총 8명이며, 13개 시립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는 팀장을 제외한 6명의 팀원(서무 제외)이 1인당 2-3개의 병원을 담당하고 있음.

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의 복잡성

- 서울시는 13개의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음.²⁾ 이때 운영방식은 민간과 공공, 직영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이해관계자간 교류와 협력, 조정과 연계가 어려운 점이 있음.
- 병원이 가진 전문가집단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비전문가 집단인 서울시 시립병원 운영팀에 의한 조정과 연계 기능은 제한적으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임.
- 이로 인해 기존조직이 관여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료분야 행정수요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특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플랫폼으로써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립병원 경영의 개선을 이루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 공공보건"공공보건의료재단"(안) 검토

-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아래 표와 같이 이사회, 대표이사, 4개 사업부서, 35명(대표이사, 감사 포함)으로 구성할 계획임.

2) 서울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에 의한 출자기관, 3개의 직영병원(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과, 3개의 공공위탁병원(동부병원, 북부병원, 용인정신병원을 서울의료원이 수탁받아 운영중), 5개의 민간위탁병원(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1> 공공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재단" 인적구성

구분	필요 전문영역	해당자격	필요전문성 총족 최소인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부	의료분야 전문가	의료 (예방의학 등 전문의), 임상 간호, 간호행정 분야 경력 및 자격증/학위 소유	6명/10명
지역보건 강화부	보건분야 전문가, 정책분야 전문가	예방의학, 지역보건, 보건정책, 통계 (빅데이터) 분야 경력 및 학위 소유	7명 /7명
경영혁신부	병원경영전문가	의료경영, 의료정보, 병원 기획, 전략컨설팅, 병원회계 분야 경력 및 학위 소유	7명/11명
운영지원부	병원 행정 전문가	병원행정, 연구행정 분야 경력 및 학위소유	2명 /5명

○ 인력구성의 중기추계와 관련해서 제출된 안을 살펴보면 2021년까지 10명을 늘려 총 45명으로 조직의 확장을 예정하고 있음.

※ 조직확장계획안을 살펴보면 환자의 권리를 보장,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인력 2명, 서울건강포럼, 보건의료패널 구축을 위한 인력 4명, 병원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공유플랫폼을 위한 인력 2명, 그 외 행정직 2명이 증가할 예정임.

○ 설립시와는 달리 확장시기에는 연구관련 인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병원관련 행정 및 경영과 관련된 인력의 증가량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업무분장내역을 검토해 보면,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시립병원의 지원조직으로서 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알 수 있음.

※ 집행부가 제출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업무분장내역(안)을 토대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을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질 향상부는 최종 12명으로 구성되게 되며 시립병원 질 향상을 위한 CP(clinical pathway), QI(quality improvement)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며 지역보건 강화부는 실질적으로 연구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된 역할은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보건의료 DB(database)관리 및 보건의료패널

구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임.

경영혁신부의 경우 시립병원의 경영관련 한 사항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주로 기획과 컨설팅, 회계적 역량에 주목할 것으로 보임. 운영지원부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총무적 성격이 강한 부서로 나타남.

4 주요사항 검토

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이 가진 법률적 한계

-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재단"설립이 그 목적³⁾이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정의는 제2조⁴⁾⁵⁾에서 밝히는 바, 「서울특별시립 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13개의 시립

3)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보건의료기관과 각 자치구 보건소를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 및 각 자치구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의미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2항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고 하였음.⁶⁾
- 지원이라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음.
- 본 조례안이 입법된다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업무를 “공공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등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하게 되는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의료기관에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을 제한하여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존재함.⁷⁾

- 다른 방식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동 재단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면, 상위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경우 의료기관에 수탁해야 함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제정안 제1조에서 밝히는 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본 제정안의 목표이며 이에 제5조에서 밝히는 “공공보건의료재단” 사업의 주요 내용은 병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임.

- 상위 법령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 밝히는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나. 중앙정부(행정자치부) 반대 의견 회신

- 중앙정부(행정자치부)는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협의 요청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립의 필요성이 크지

7) 집행부는 “공공보건의료재단”설립의 필요성으로 “공공의료지원단”의 성과가 미미하였다고 함. 다만, 연구와 그에 따른 인건비가 “공공의료지원단” 예산의 대부분인데 약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의료지원단”의 성과가 미미한 것은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설립된다고 하여 해결될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함.

않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

- ① "공공보건의료재단"설립을 통해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 시립병원에 대한 연계·조정·협력, 씽크탱크의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나 연계·조정·협력의 기능은 보건의료정책과의 고유업무로 출연기관의 대상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② 시립병원에 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씽크탱크로의 기능은 현재 있는 조직인 "공공의료지원단"의 확대개편 방안이 타당함.
- ③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으로 인한 보건의료정책과의 업무 경감 부분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여 조직개편안이 필요함.

※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의 시립병원운영팀이 운영되고 있는 바,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시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개 팀의 역할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조직개편안이 요구된다 하겠음.

다. 정책적 검토

- 보건의료정책이 가진 목표는 시민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낮은 경제적 부담을 통한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임. 현재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지향해야 할 첫 번째 지향점이 예방적 의료정책임을 감안할 때, ① 건강 자원의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형평성 문제, ② 도시빈곤·취약계층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환경적 원인 등에 대한 연구기능이나 사업기능 등이 "공공보건의료재단

"에 요망된다고 하겠지만,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시립병원 관리에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예방의료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소극적 기능에 국한될 것으로 보임.

- ※ 재단의 주목적을 시립병원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방점을 둘 경우, 병원의 경우 대형병원일수록, 좋은 장비를 많이 갖추수록, 비급여 진료가 많을수록 병원의 경영은 개선되기 쉬움. 따라서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소신진료라 불리는 적정진료 보다는 비급여 진료를 강화하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집행부 및 의료소비자가 공유하고 있으나,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적정진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임.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생기더라도 적정진료와 과잉진료의 사이에 놓여 있는 의료인의 재량이라는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오히려 단기성과 실적을 위해 경영개선으로 공공성이 훼손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성이 훼손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설립된다면 지향해야 하는 바는 시민의 건강 유지와 향상이라고 하겠음. 따라서 병원의 경영만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행태를 증가시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바, 건강과 사회적인 환경은 유의미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재 제시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미래 비전에는 병원이 중심이 되고, 사전예방의료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이 시민건강국의 전반적인 정책 측면에서 타당한 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하겠음.

- 본 조례안은 복잡한 거버넌스를 가진 시립병원의 경영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립병원들을 전문가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는 안임.
- 그러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의료지원단”이 시립병원(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므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법률적인 근거는 미흡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음.⁸⁾
- 집행부 법률지원담당관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힘.
 - ①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설립될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하는 역할이 상당부분 중복된다고 사료됨.
 - ②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여겨지며
 - ③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이라는 재단법인으로 설치하는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재단법인의 경우 시의 소속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인으로 재단법인

8) 1.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을 수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가? 2.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하나인가? 이에 대하여 복지부의 유권 해석 받기를 권고함.

이 행정기구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권한의 대리 또는 위임은 불가능 하며 권한의 대행만이 가능함.

- ④ 그러나 권한의 대행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수탁자 제한규정을 우회하는 것으로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업추진에 신중하여야 할 것.
- 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업내용을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하려면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기를 권고함.
- ⑥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동시에 운영될 경우 그 사업의 중복내용으로 인하여 정책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의견을 낸 바 있음.

- 한편,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그러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병원의 지원조직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동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보건의료는 의료와 보건이 ‘건강’이라고 하는 가치를 매개로 하여 통합된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임. 보건의료체계란 의료서비스

를 포함한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서비스 그 자체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⁹⁾ 본 제정안에 의하여 “재단”이 설립될 시 의료체계의 측면에서 접근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보건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임.¹⁰⁾

- 정책적 측면에서도 사전예방의학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민의 다양한 보건행정수요를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연구·조사하고 정책적 대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중앙정부의 의견회신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9) 박지용(2013) 보건의료에 대한 헌법적 기초로서 개념적 및 역사적 접근. 헌법학연구 19(4) pp. 509-546

10) 진단과 치료 등 의료서비스의 성과와 산출을 중심으로 의료의 개념을 잡을 수 있으나 보건의 경우는 인구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음. 이를 통합적 관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보건의료’여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20
----------	------------

제안연월일 : 2016년 9월 6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법령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령 상호 간 규범 구조와 규범 내용면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의 목적을 상위법령 등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 나.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을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서울특별시립병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를 삭제한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를 각각 안 제2조와 안 제3조로 한다.

안 제5조를 안 제4조로 하고, 같은 조의 안 제1호부터 안 제4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1.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2.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3.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4.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 훈련

안 제5조의 안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의 안 제6호부터 안 제10호까지를 각각 안 제5호부터 안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안 제8호 중 “공공보건의료”를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로 한다.

안 제6조부터 안 제20조까지를 안 제5조부터 안 제19조로 한다.

수정안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공보건의료기관</u>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u>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u>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서울특별시립병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u>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공공보건의료기관</u>”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u>보건의료기관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보건의료기관과 각 자치구 보건소를 말한다.</u></p>	<p><삭제></p>
<p>제3조(적용범위)</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제2조(적용범위)</p>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안과 같음></p>
<p>제4조(설립)</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제3조(설립)</p>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u> 2. <u>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지원 및 컨설팅</u> 3. <u>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질 관리 지원 및 통계 구축</u> 4. <u>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u> 5. <u>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훈련</u> 6.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7.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8.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9. 시장이 위탁하는 <u>공공보건의료</u> 관련 사업 10.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p>제6조~제20조</p>	<p>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u> 2. <u>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u> 3. <u>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u> 4. <u>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 훈련</u> 5. <u><삭제></u> 5.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6.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7.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8. 시장이 위탁하는 <u>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u> 관련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p>제5조~제19조</p>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서울특별시립병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2.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3.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4.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 훈련

5.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6.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7.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8.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②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 ③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또는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⑤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 총괄한다.
-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1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게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7조(검사·보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